

국외대학교환학생운영규정

5-2-10

규정번호 5-2-10
제정일자 2018.8.27
최근개정 2026.7.20
개정차수 3차 개정
관리부서 글로벌교육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과 교환학생협정체결을 맺은 국외대학(교) 상호 간 교환학생을 파견·운영하는데 있어서 교환학생의 교육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국외대학 교환학생”이라 함은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국외 교환학생협약체결대학에 파견되는 우리대학의 학생을 말한다.
- 2.“국외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이라 함은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국외 교환학생협약체결대학으로부터 유학을 목적으로 우리대학에 오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임과 권한) ① 국외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는 글로벌교육센터로 한다.
(개정 2019.06.17.)

② 국외대학 교환학생 운영에 따른 관리·지원부서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학사지원팀 :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지원,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여부 승인
2. 교환학생 운영학과 : 교환학생 추천, 교환학생 학사관리·지도, 교육과정 운영

③ 글로벌교육센터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글로벌교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결정한다.(개정 2019.06.17., 2026.7.20.)

제 2 장 국외대학 교환학생

제4조(국외대학 수학) ① 국외대학 교환학생은 국외대학의 졸업학점에 포함되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외대학 별도의 교육과정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교환학생 파견학기 이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7.20.)

③ 우리대학 학생이 국외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외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우리대학 재학연한과 수업연한에 산입되며, 수학기간 중 우리대학의 승인 없이 자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5-2-10 국외대학교교환학생운영규정

④ 국외대학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회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신청자격) 국외대학 교환학생은 파견 당해학기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우리대학에서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2.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3. 국외대학에서 해당 국가의 외국어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의 국가별 어학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가(언어권)	표준 어학기준	비고
영어	TOFEL ibt 70 또는 TOEIC 500	미국 대학 외국인 입학 최저 기준
일본어	JLPT 3급	일본 대학 외국인 입학 최저 기준
중국어	HSK 3급	중국 대학 외국인 입학 최저 기준
기타	해당 국가 외국인 입학 최저 기준에 따름	

(표 개정 2024.7.24.)

4.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징계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된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재직증명의 연속성이 입증되는 사항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허가된 자에 한함(개정 2024.7.24., 2026.7.20.)

제 6 조 (교환학생 신청) 국외대학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글로벌교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6.17.)

1. 국외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서식) 1부
2. 국외대학 교환학생 서약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어학증명서 사본 1부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교환학생 선발) ① 국외대학 교환학생은 공개경쟁을 통해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외대학 교환학생협약체결 당시 특정 소속 학부(과)가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 학부(과)에서 우선 선발한다.(개정 2019.06.17.)

② 최종선발은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19.06.17., 2026.7.20.)

제 8 조 (등록금 및 경비) ① 국외대학 교환학생의 수학기간 동안 매 학기 등록금은 우리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학기간 동안 체재에 필요한 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환학생 협약체결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다.

제 8 조의 1 (교과과정 안내) 교환학생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은 국외대학 유학 전에, 국외대학

명지전문대학 규정 / 5-2-10 국외대학교환학생운영규정

에서 제공한 교육운영계획서 및 교과목 개요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선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 9 조 (귀국보고) 국외대학 교환학생은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글로벌교육센터에 소정의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학기의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7.24.)

제 10 조 (학점의 인정) ① 국외대학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승인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에 의해 학점을 부여한다.

② 국외대학 교환학생의 학점 인정은 1학기에 최대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최대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각 호에 의한다.

1. 교환학생들의 학점인정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우리대학과 학생 교환학생 협약 체결대학에 파견되어 수학하고 취득한 학점에 한한다.

2. 학점 인정의 기본적인 기준은 수업 일수와 수업 시간으로 하되, 파견대학(교)의 학제를 검토한 후 전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를 계산한다.

3. 취득 학점은 우리대학에서 전공과정[전공], 교양과정[교양], 일반선택[일선] 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4. 파견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평균평점 환산 시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반영한다.

5. 취득 교과목 중 성적이 Pass, Satisfactory, 優秀, 良好 등 파견대학(교)의 취득학점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은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06.17.)

6. 파견대학(교)에서 졸업요건으로 인정되는 학점만 인정이 되며, 수업으로 수강을 했더라도 성적증명서상 학점이 'O'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취득한 학점이 우리대학과 학점 체계가 상이하거나, 우리대학 인정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구분별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8. 전공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후, 기타 이수구분에 대해 산정한다.

9. 언어 관련 학과(중국어비즈니스과, 일본어과)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자국어로 운영되는 교과목은 전공과정으로 인정한다.(개정 2024.7.24.)

10. 비언어 관련 학과의 경우 과목개요서 등을 토대로 이수구분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11. 교양과정은 교양학점으로 인정하며, 전공·교양과정으로 인정받지 않은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제 11 조(학생지도) 국외대학 교환학생의 지도는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우리대학의 학칙 또는 교류대학의 학칙에 의거 처리한다.

제 3 장 국외대학 외국인 교환학생

제 12 조(유학전형) ① 국외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은 교환학생 협약체결대학의 선발과정에 따르

명지전문대학 규정 / 5-2-10 국외대학교환학생운영규정

며, 체류자격(D-2-6)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외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협정기관과 맺은 협약을 우선으로 하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TOPIK 2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06.17.)

③ 국외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은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과정을 본인 부담으로 수강할 수 있다.

제 13 조(등록금 및 경비) ① 국외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의 등록금은 교환협정서 및 국외대학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되어야 한다.

② 유학기간 동안 체재에 필요한 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환학생 협약체결대학과의 상호 협의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제 14 조(소속) 국외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의 소속은 해당 학과(부)로 한다.

제 15 조(학사관리) ① 국외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의 학사 관리는 소속 학과(부)에서 담당한다.

② 외국인 교환학생은 우리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교환학생 입국 최소 6개월 이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한 별도반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교환학생의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지도교수) 국외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의 학업 및 생활에 대한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를 두어야 하며,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장을 지도교수로 한다.

제 17 조(외국인 교환학생의 학점인정) ① 외국인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우리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에 의거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인 교환학생의 학점 인정은 한 학기에 최대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교육운영계획서를 승인 받은 경우에는 교과과정에 명시된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③ 글로벌교육센터는 성적확정 후 학점인정 사항이 반영된 성적증명서를 협정기관으로 발송한다.(개정 2019.06.17.)

제 18 조(학생증) 국외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의 학생증은 교무처에서 학번이 부여된 후, 글로벌교육센터의 요청으로 학생지원처에서 발급한다.(개정 2019.06.17.)

제 19 조(출입국) 국외대학 외국인 교환학생의 우리대학 유학에 관한 비자취득 등 출입국 관련 사항은 글로벌교육센터에서 담당·관리한다.(개정 2019.06.17.)

제 20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5-2-10 국외대학교환학생운영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3호·제6호, 제9조, 제10조제2항제9호)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6호, 제7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6호, 제7조제2항)